







#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안내

## ① 안전검사란?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
  - ※ 안전검사 대상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함(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1항)

## ②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

-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
  -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 또는 선회)로 운반하는 설비(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·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한 것)로서 정격하중 2톤이상인 것
-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  -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(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·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)에 한정하여 적용

| 대상   | 대상   | 비대상  | 대상  | 대상   | 비대상  |
|--|--|--|---|--|--|
|  |  |  |  |  |  |
|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  |  |  |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 |  |  |

## ③ 안전검사 신청 및 절차

| 신청·절차         | 내 용   |  |
|---------------|---|--|
|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, 우편,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제출 (검사기관이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지역사무소에 신청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   |  |
| 민원접수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원접수 담당부서를 통해 민원접수</li> </ul> </li> </ul>  |  |
| 수수료 입금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수료 산정 및 입금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금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</li> </ul> </li> </ul> |
| 안전검사일 통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검사 실시일 확정 후 유선 통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(SMS) 등으로 7일 이내 통지</li> </ul> </li> </ul>   |  |
| 안전검사 실시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인이 요청한 검사기관 지정검사장에서 안전검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출장검사 가능 : 신청인이 지정검사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하중시험용 분동 등을 준비하고, 작동시험 등이 가능한 충분한 검사장소를 확보하여 3대 이상 신청 시 출장검사는 가능하며, 대한산업안전협회 전국 지회 모든 곳에서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 |  |
|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검사 합격증명서,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</li> </ul>   |  |

## ㉠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

- ①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
  -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- ②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
  - 2018년 4월 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-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등록 차량
  - 2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- ④ 2015년 1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
  -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
## ㉡ 안전검사 수수료

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

| 안전검사대상  | 안전검사 수수료 | 부가세    | 납부금액 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이동식 크레인 | 59,000원  | 5,900원 | 64,900원 |
| 고소작업대   | 54,000원  | 5,400원 | 59,400원 |

## ㉢ 안전검사 주요 검사 항목

|   |   |
|---|---|
|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b>주요검사항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장구조물 등</li> <li>• 안정기</li> <li>• 작업대 부착 여부 등</li> <li>• 연장구조물 구동장치</li> <li>• 록 블록</li> <li>•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</li> <li>• 드럼</li> <li>• 선회장치</li> <li>• 제어장치 등</li> <li>• 안전장치</li> <li>• 작동시험</li> </ul> </div> |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b>주요검사항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장구조물 등</li> <li>• 안정기</li> <li>• 연장구조물 구동장치</li> <li>• 작업대</li> <li>• 제어장치</li> <li>• 안전장치</li> <li>• 작동시험</li> <li>• 비상정지장치</li> </ul> </div> |
| <b>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</b>   | <b>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</b>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요검사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통신활선작업용 고소작업대로서 작업대 정격하중이 200kg이하이고, 바닥면적이 1m<sup>2</sup>이하인 경우 하중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</li> </ul>  |   |

## ㉣ 위반 시 과태료

| 주요 위반 내용                 | 과태료            | 관련 근거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|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|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|
| 안전검사 합격한 것임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|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|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 |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3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·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·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